

## 삼성전자, 미 샌디스크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제소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을 이유로 미국 샌디스크를 제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샌디스크가 4개의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 지불 등을 포함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샌디스크측은 “삼성전자와는 이미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크로스 라이선싱(상호특허교환)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오는 8월 만료된다”며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술상의 조치로 판단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해남김 MP3 플레이어 특허분쟁 “피해 속출”

디지털 오디오 기기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MP3 플레이어 특허 분쟁이 해를 넘기면서 관련 업계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특허 문제로 인해 신규 투자 유치가 보류된 기업의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코스닥 등록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힌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특허보유 업체인 엠피맨닷컴이 특허 청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정정 청구를 특허청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특허 분쟁 해결 기한이 더욱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오디오 기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서도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번지고 있는 특허 분쟁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 자금 유치 난항 지난 해 5월 3일 코스닥 등록을 신청한 바 있던 거원시스템은 특허 문제로 기업 공개(IPO)의 꿈을 미룬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매출액 38여억원 중 12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IPO 주관사인 동양증권의 권유에 따라 등록 일정을 지금껏 연기해 오고 있는 것.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도 해당 주관사는 특허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코스닥 등록 추진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며 “IPO를 통한 자금 유치로 신규 사업을 강화하고자 한 방침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 디지털웨이드 마찬가지.

지난 2000년 400여억원 매출에 12여억원 당기순이익을 거둔 이 회사 역시 지난 해 5월 24일 코스닥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특허 문제로 인해 여태껏 IPO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 정혁기 기획실장은 “자금 압박의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IPO나 투자 유치 등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자금 마련 차원에서 코스닥 등록 등을 추진했으나 특허 문제의 미해결로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원 등도 연초 코스닥 등록을 추진했으나, 현재 특허 문제 해결 시점까지 심사청구 연기를 해 놓은 상태다.

또 세계 MP3 CD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한 아

이리버 역시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어 비슷한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D사의 경우 G 창투사로 부터 자금 유치를 시도했으나, 역시 특허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분쟁해결 지연 거듭 특허 분쟁 해결의 실마리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엠피맨닷컴이 지난 해 11월 20일 특허청에 자사의 특허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최근에서야 확인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도 결과적으로 수개월 정도 늦춰 졌다.

엠피맨닷컴과 분쟁중인 디지털웨이 등의 특허 소송을 맡고 있는 엘엔케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현수 변리사는 “정정청구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엠피맨닷컴의 정정청구 사실을 특허청으로 부터 통보 받았다.

특허청의 이 같은 실수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 소송 결과는 더욱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리사는 이번 엠피맨닷컴의 정정청구가 현재 진행중인 특허 이의 신청 건 외에도 병행되고 있는 무효심판소송 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 분쟁 지연은 특허청 건과는 별도로 엠피맨닷컴이 지난 해 상반기에 디지털웨이와 현원 등을 상대로 서울과 대구 등의 지방법원에 냈던 특허침해에 따른 생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통 3~4개월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7~8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원이 판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법 등은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 남은 과제 이 처럼 특허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는 결과적으로 국내 MP3 플레이어 업계의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공개 등을 통한 자금 수혈로 대대적인 변신을 모색해야 하는 국내 MP3 플레이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빗대 “특허 분쟁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거듭된 특허 분쟁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 분쟁으로 해결할 경우 언제 해결될 지 기약할 수 없다”며 “해당 분쟁 관련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news24

스포츠복표 인터넷 판매 둘러싸고 특허권 분쟁 가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인터넷 판매 사업을 둘러싸고 특허권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엔지넷과 타이거풀스아이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이 형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된데 이어 이번에는 엔지넷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자, 수탁업자의 민사 본안 소송으로 까지 이어진 것.

엔지넷(대표 강문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최일홍)과 스포츠토토(대표 이주혁) 및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대표 문제식)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소장에서 엔지넷은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사업된 웹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할 것”과 “특허권 침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선 10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엔지넷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의 승패 결과 및 점수 맞추기”라는 내용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업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는 수탁사업자,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모의토토”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타이거풀스아이와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이 합병한 회사로, 스포츠토토와 함께 타이거풀스 인터넷내셔널의 자회사이다.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특허권 논쟁 이들의 분쟁은 지난해 11월 엔지넷이 타이거풀스아이가 무료로 운영하던 “모의토토”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작됐다.**

이어 12월 엔지넷은 특허침해죄로 서울지법에 “타이거풀스아이”를 고소했다.

하지만 타이거풀스아이는 지난해 12월말 이 사이트를 내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엔지넷측은 “타이거풀스아이가 자진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측은 “인터넷 시험 발매를 위해 모의토토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 건도 곧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민사소송건은 최근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과 스포츠토토가 타이거풀스 사이트를 통해 시험 유료 발매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엔지넷은 이들이 진행하는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 **대립하는 두 진영 스포츠토토는 엔지넷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확인심판 및 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해 놓았다.

스포츠토토의 최승근 과장은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할 것이며 그 동안의 소송으로 빚어진 명예 실추와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 엔지넷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문수 엔지넷 사장은 “스포츠토토는 오프라인상 수탁 사업권만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묵인아래 인터넷 복표사업까지 시행중”

이라며 “특허권 침해 뿐 아니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도토축은 “인터넷발매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의가 있었다”며 “승인을 받는 대로 복표 본 발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e-저작권 소송, e북 출판사로 로제타북스 승소

e북 저작권을 둘러싼 오프라인 출판사와 e북 출판사의 법정 다툼이 결국 독립적인 e북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 법원은 랜덤 하우스(Random House)가 로제타북스(RosettaBook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차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차 공판에서도 소송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랜덤하우스는 사실상 온라인 상의 e북 저작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 셈.

세계 최대의 영문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는 지난해 온라인 e북 출판사인 로제타북스가 원작자와 계약을 맺고 고양이의 요람(Cats Cradle)이라는 e북을 출판하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로제타북스의 CEO 아서 클레바노프(Arthur Klebanoff)는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e북 시장 발전은 물론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랜덤 하우스 측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재항소할 뜻을 밝혔다.

출처 news24

## 게임업체, “테트리스게임 로열티 내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느 업체나 서비스해 왔던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게임업체가 국내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로열티를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는 미국의 ‘더 테트리스컴퍼니’로 지난 80,90년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수년전 러시아 게임개발사로부터 사들였다.

더테트리스컴퍼니는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지역에서 테트리스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유는 최다회원을 보유한 웹게임 사이트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유의 담당 변호사는 “더테트리스컴퍼니는 한국의 인터넷 게임이 급부상하며 시장이 커지자 로열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게임사들이 테트리스로 얻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받는 러닝로열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는 “그러나 그 비율은 업체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NHN과 협상은 이르면 내주안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더테트리스컴퍼니는 인터넷 게임의 로열티 협상이 해결되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테트리스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대유가 제시하는 로열티 비율과 NHN 등 국내업체의 입장차가 너무 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테트리스를 서비스하는 게임업체 대부분은 테트리스와 함께 장기, 고스톱 등 다른 게임을 무

료로 서비스하면서 온라인 광고나 아이템 판매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테트리스로 발생하는 수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게 로열티 부과에 어려운 점으로 남아있다.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N사 관계자는 "테트리스컴퍼니가 국내 인터넷 게임업체의 수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비율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러닝로열티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고액의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마시는 우황청심원 발명특허 인정안 돼

마시는 액체 우황청심원은 특별한 효과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발명한 김모씨가 K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특허를 출원한 액체 우황청심원의 효과는 보통 환제로 먹는 우황청심환을 액체로 만든 것일 뿐 특별한 작용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 아닌 만큼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마시는 우황청심원의 발명특허를 등록한 김씨는 특허심판원이 '액체우황청심원 제조법은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고 있거나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신청한 등록무효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냈다.

## SIM카드 국제자동로밍서비스 특허 침해 "논란"

KTF(www.ktf.com 사장 이용경)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이 오는 4월부터 SIM(가입자정보 모듈)카드 방식의 국제자동로밍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자사에 대한 특허 침해로 규정, 기술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사간 특허침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KTF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 SIM카드 방식의 국제자동로밍과 관련,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 놓은 상태이며 이르면 4~5월중 특허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허권을 인정받기 전이라도 특허 침해에 대응하도록 보상금 청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SK텔레콤측에 기술사용에 대한 특허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GSM방식이 통용되는 국가의 이용자가 한국에서 SIM카드를 사용,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KTF는 가입자 확인절차에 필요한 가입자 인증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놓고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KTF 관계자는 "GSM에서 사용하는 가입자 인증기술은 단말기를 작동하거나 통화 시작 때와 마칠 때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이 기술은 불량 가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GSM 자동로밍이 KTF가 출원한 SIM카드 방식의 국제자동로밍기술 가운데 가입자 인증부분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KTF가 출원중인 기술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며 기술료 요구 등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인증기술을 기반 기술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KTF의 기술을 거치지 않고 가입자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세부기술부문에 서 KTF의 기술을 피해 개발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논쟁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미 의회가 저작권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최한 상원 법사위에 월트디즈니<스>소니<스>MS<스>뉴스코퍼레이션<스>인텔<스>AOL타임워너 등 양대 산업의 대표적 업체들의 주요 인사들이 출석, 치열한 설전을 전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할리우드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불법 복제된 음악<스>영화<스>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품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 콘텐츠 산업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PC<스>DVD플레이어<스>CD플레이어 등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기술의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실리콘 밸리의 하이테크 업체들은 그런 조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복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자

업체들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 전자 제품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월트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은 “불법 복제가 PC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MS<스>인텔<스>애플<스>텔컴퓨터 등 하이테크 업체들이 복제방지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20세기 폭스를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의 피터 체닌 사장도 “저작권 보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눈 뜨고 콘텐츠를 도난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은 이상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인텔의 앤드류 S.

그로브 회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해서 나머지 산업 전체가 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환경과 소비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산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사장 등 다른 하이테크 대표 자들도 70년대와 80년대에도 비디오와 카세트 등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콘텐츠 유통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미 상원은 청문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 입법화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



이다.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어네스트 F.**

홀링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양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올해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제시한 법안 초안에는 “불법 복제된 하이테크 전자 업체들이 PC와 디지털 TV, DVD 플레이어 등을 만들 때 처음부터 불법복제된 영화, TV쇼, 음악 등을 볼 수 없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하이테크 업체들은 정부가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엔터테인먼트측의 요구를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1. 정비기기 특허분쟁 파문 확산**

정비기기 특허분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리프트 전문업체인 헤스본이 네스텍에 OEM으로 리프트를 공급하는 성실기기에 대해 지난 99년 제조한 4주식 리프트의 안전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은 고등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또 최근엔 정비용 멀티프레스를 생산하는 분쟁이 최근엔 프레스를 생산하는 한솔엔지니어링이 잡지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정비기기업계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헤스본의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의 1차 판결에서는 3건 모두 성실기기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헤스본은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에 항소, 결국 3개의 실용신안권 중 1건은 헤스본이 승소하고 1건은 성실이 승소, 남은 1건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각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대법원 판결에서 1건이라도 헤스본이 이길 경우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배상범위인 제조·판매 최종사용자에 포함되는 성실기기와 네스텍은 물론 특허 침해여부를 모른 채 구입, 사용한 정비업체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스본은 이미 2심 승소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업체가 4주식 리프트를 생산할 수 없도록 생산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해당 기기를 보유한 정비업체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요 정비업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결과는 성실기기뿐 아니라 다른 리프트 제조업체들도 해당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헤스본은 또 최근 X자형 리프트에 대해서도 2건의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내 리프트 관련 특허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스본에 이어 최근 한솔엔지니어링도 자사의 프레스를 모방한 제품이 판매예정여서 정비업체들이 본의 아닌 선택에 의해 최종사용자로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당부하는 글을 잡지광고로 실고 있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한솔엔지니어링측은 “심혈을 기울여 연구·개발한 장비가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을 얻어가니까

일부 업체들이 장비를 그대로 빼껴 싼값으로 판매하려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고 안내문은 고객이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업체가 비록 승소해도 주 고객인 정비업체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분쟁을 계기로 국내 정비기기업계에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경자동차신문

이 상표를 회수하고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되면 이 상표를 다시 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 ⑨ **이찬진 컴퓨터교실** 상표 당분간 못봐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이 한글과 컴퓨터제작시절 만든 이 상표는 그동안 (주)이찬진컴퓨터교실과 (주)한컴교육나라가 써 왔으나 최근 이사장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찬진상표를 시장에서 회수했다.

이에 따라 한컴교육나라는 한컴i컴퓨터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바꿨고, (주)이찬진컴퓨터교실도 상표사용을 중단했다.

이찬진상표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두 회사가 그동안 가맹점모집, 회원모집 등을 하면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지난 1997년 P사에 상표권을 빌려줬으나 P사가 이 권한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져 이찬진 컴퓨터교실과 한컴교육나라가 서로 브랜드 사용권자라고 내세우면서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중이다.

이 사장은 “내 이름으로 된 상표를 갖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줬기 때문에

## ⑩ **미법원, 윈도우 상표 보호 요청** 「기각」

지방 법원 판사가 ‘윈도우’라는 단어에 대한 MS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MS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MS는 지난 11월 OS 제조 업체인 린도우닷컴(Lindows.com)이 불법으로 자사의 윈도우 상표를 이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US 지방 법원 판사인 존 코페너는 지난 15일 발표된 예비 판결에서 이번 소송은 ‘윈도우’라는 단어가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코우페너는 “세계의 선두 SW 프로그램의 이름을 단지 한 글자만 바꿔서 회사명과 제품명으로 사용한 린도우닷컴의 위험한 결정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 MS도 1983년에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윈도우 생성 기능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를 자사의 제품명으로 선택한 위험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코우페너는 린도우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고 유사 업체가 ‘윈도우’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MS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요청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P3닷컴(MP3.com)의 CEO였던 마이클 로버트슨이 운영하는 린도우닷컴은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리눅스 OS를 개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우리는 법원 문제를 해결 짓고 우리의 목표인 PC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로버트슨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MS는 의견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 효성, 타이어코드 국제특허소송 승소

효성이 타이어 보강재인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와 관련한 미국 하니웰과의 국제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텔버트 테럴 판사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효성의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은 하니웰의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니웰은 지난해 4월 효성이 자사의 특허를 허가없이 사용해 폴리에스테르 강력사와 직물을 생산, 미국시장에 판매했다며 이 제품의 미국내 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ITC에 냈다. 이에 앞서 효성은 지난달 하니웰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 한국과 미국에서 자유롭게 타이어코드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은 세계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시장의 28%를 점유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북미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법원, 저작권 침해 판결

MBC의 인기 주말연속극 ‘여우와 솜사탕’이 인기 작가 김수현 씨의 작품 ‘사랑이 뭐길래’와 비슷해 김 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주말연속극 ‘여우와 솜사탕’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결정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 방영이 중단될 경우, 국민 신뢰 상실에 따른 MBC의 손해는 막대하지만, 방영을 계속한다고 해도 김 씨가 입게 될 추가적 손해는 크지 않다”며 ‘여우와 솜사탕’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는 김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여우와 솜사탕’이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구성과 전개, 인물의 대사 등에 있어 ‘사랑이 뭐길래’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법원이 MBC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에 따라, 김 씨가 앞으로 MB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경우,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매일경제

### 하이닉스 매각협상 “지적재산권” 최대쟁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매각협상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이전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권단은 하이닉스의 정밀 실사과정에서 나타날 잠재부실과 지적재산권 손실보전을 합해 5억 달러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마이크론은 10억~2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생산에는 수천, 수만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관련기술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 일부 기술은 해외개발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들여오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생산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 해외개발업체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특히 해외개발업체와 인수자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기술이전을 거부하거나 로열티 금액을 크게 올린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기술의 마이크론 이전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론은 각종 특허권 침해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정이 불가능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

마이크론은 이같은 지적재산권 이전에 따른 각종 소송과 배상금액을 사실상 채권단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하이닉스 메모리사업부문 매각 대금이 40억달러인데 10억~20억달러를 손실보전용으로 적립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거부하고 있다.

미국 AIG그룹이 현대투신 인수를 포기한 것도 정부가 소액주주와 펀드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분율만큼 책임지라

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미국기업은 법적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를 파는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하이닉스-마이크론 합병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 월드컵상표권 침해 공방

“‘월드컵’이란 세 글자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월드컵 한국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전 세계 127개국에 ‘월드컵’이란 용어를 상표로 등록해 놓았다.

‘월드컵’이란 세 글자는 법률적으로 FIFA의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한국 조직위 관계자는 “‘월드컵’은 보편적인 단어이지만, 축구에서 월드컵은 곧바로 FIFA를 연상케하는 만큼 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월드컵 한국 조직위와 FIFA간에 체결된 대회 협약서엔 “2002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용어에 대해 FIFA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다.

월드컵 조직위 담당자는 이 규정에 대해 “축구에서 ‘월드컵’이란 용어는 물론이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까지 FIFA의 승인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란 용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백, 수천 개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들이 부지불식간에

‘월드컵’ 내지 ‘2002 월드컵’ 등의 용어나 표현을 웹상에서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FIFA가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삼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FIFA가 선정한 월드컵 공식후원 포털업체는 ‘야후’다.

따라서 야후가 아닌 다른 포털 및 인터넷업체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조금이라도 연상케 하는 콘텐츠를 네티즌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

FIFA에 막대한 후원금을 낸 야후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FIFA 역시 “공식 후원업체의 이익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상의 상표권 침해사태에 대해 엄중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1996년부터 FIFA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김&장이 소송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다.

형사적으로 상표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다.

“상표”는 자본주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저작권 등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달리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도 이번 월드컵 시즌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은 원고가 될 FIFA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제기할 지 두고 볼 일이지만, FIFA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가차없이 소송을 제기했던 전례로 미뤄볼 때 많은 국내 기업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고·엠블렘·마스코트·포스터 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상표가 아니라 축구와 관련해

‘월드컵’이란 용어 자체까지 사용을 금지한 FIFA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월드컵 컬럼을 웹으로 서비스할 계획이었던 교육용 콘텐츠업체인 B사 관계자는 “월드컵은 이미 보통명사가 아니냐”면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월드컵’이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국내의 포털업체들도 FIFA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야후코리아가 월드컵 관련 모든 콘텐츠를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최대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미 FIFA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월드컵 조직위 지적재산권 담당자는 “하루평균 월드컵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가 140통 가량 걸려오고, 10여명이 사무실로 찾아와 낯선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멀티SAM분쟁' 식마리.. 특허심판원, 씨엔씨측 소송기각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는 지난해 스마트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멀티SAM”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심판장 이범호)은 이날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 액세스 시스템 및 방법”(일명 멀티SAM)의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문에서 “스마트로의 ‘멀티SAM’은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개발한 샘(SAM)보드와 유사하기는 하나, 기능과 구성면에서 부분적으로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제기했던 특

허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스마트로가 특허출원하기 전인 지난 98년 자사가 전자통신연구원(ETRI)·시정개발연구원·서울대·인텍 등과 '멀티SAM'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스마트로측은 "명백한 특허권침해"라며 씨엔씨측을 형사 고발하는등 지난 2년간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씨엔씨측은 이날 "이번 특허무효 소송이 기각으로 당장 영업활동엔 지장이 없겠지만, 이달 중에 최종 결정될 '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의 결과 여하에 따라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사이버강의ID 무단거래 성행.. 저작권침해 논란일듯

최근 온라인 교육사이트들이 인기를 끌면서 사이버강의ID를 거래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사이트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대형 포털사이트나 각종 동호회사이트 게시판에는 사이버강의ID를 판다는 글들이 여러전씩 올라와 있다.

사이버강의는 운영업체측에 수강료를 내고 특정ID와 패스워드를 받은 네티즌만이 인터넷에 접속해 강의를 듣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ID를 다른 네티즌들에게 싼 가격에 되팔아 수강시간을 조절해 강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강의ID를 거래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저작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교육업체는 "특정 IP어дрес(컴퓨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해봤지만 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처 한국경제

발특2002/5

